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8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7일

발 의 자: 박춘선, 곽향기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재진, 남궁역, 남창진,  
문성호, 박 석, 봉양순,  
서상열, 소영철, 신동원,  
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 
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  
이숙자, 이영실, 장태용,  
최민규, 최진혁, 홍국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 수수료 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는 한편,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'서울 동물보호의 날'을 지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'서울 동물보호의 날'을 정하고,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의 실시와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(안 제12조)
- 나.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수료 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(안 제 2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동물생명존중헌장)”을 “(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.
-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(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): 전액

부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동물생명존중헌장)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25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2조(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.</p> <p>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(수수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수료한 경우(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): 전액</u></p>